

공유수면 점·사용허가에 관한 고시

포항시 고시 제 2017-84호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
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·사용허가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.

- 허가번호 : 17-20
- 점용위치 :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825-62, 63, 92
- 점용목적 : 군사훈련장
- 허가기간 : 2017. 7.12 ~ 2022. 7.11
- 허가면적 : 45,249㎡
- 허가 연월일 : 2017. 6. 23
- 피허가자 주소 :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사서함 209-101-13호
- 피허가자 성명 : 해병대제1사단장

2017. 6. 23

포 항 시 장

